

승인권자	총장	<b>지역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b>	관 리 번 호	3-7-08
심의·검토	기획위원회		제 정 일	2019.08.05.
작성부서	지역산학협력센터		최종개정일	2020.02.0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지역산학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역할, 업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센터는 산학 연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산학협력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대학 부설기관으로, 산학협력 정보체계를 일원화하고 사회맞춤형 교육의 정착 및 지역 거버넌스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제3조 (업무)** 센터는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회사(산학협력) 체결 및 대외산학교류, 기술지도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학 및 학과 산학협력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활동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통합정보시스템과 학생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연계한 기업의 요구역량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사회맞춤형교육 운영 지원, 채용약정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 우수성과에 대한 기업체 활용 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센터 및 지역산학협력 거버넌스를 대표한다.

④ 직원 및 조교는 센터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센터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지역산학협력센터운영위원회와 사회맞춤형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산학협력거버넌스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 (지역산학협력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대학혁신지원단장, 교무입학처장, 교육혁신처장, 산학취업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대학과의 산학협력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기관장 또는 산업체 부서장에 한하며, 1인의 외부위원에 대해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둔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업무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과 및 대학 산학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산학협력거버넌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위원은 대학(2명) 및 지역사회, 지역산업, 공공기관의 부서장(6명) 이상을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둔다.
- ④ 위원회의 기능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사회맞춤형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맞춤형학과 겸임교원(기업전문가교수) 추천서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20.02.07.)
  3. 지역 산학협력 기관 간의 소통을 위한 통합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역산업 공통 애로기술 해결, 산학 공동프로젝트,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에게 고지한다.

**제9조 (운영세칙)**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센터의 재원은 대학의 정규예산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예·결산)** 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 예산 및 결산규정에 따른다.

**제12조 (평가 및 환류)** 센터는 업무 전반에 관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업무를 개선하여 차기년도 업무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에 시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